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평가 의뢰인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범보좌관 신 범 식

건 명 : 남지현 소유물건

문서 번호 : 2024타경 38179

감정 평가서 번호 : 미래세한 2407-71-24004호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미래세한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TEL : (053)741-9757 FAX : (053)741-9754

(부동산)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
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장우

김

강

우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대표자 민세식



| | | | | | | |
|----------------|--------------------------|------------------------------|--------------|--------------------------------|----------------|-------------|
| 감정평가액 | 이역사백만원정 (₩204,000,000.-) | | | | | |
| 의뢰인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신범식 | | 감정평가목적 | 경매 | | |
| 채무자 | -- | | 제출처 | 경매2계 | | |
| 소유자 (대상업체명) | 남지현 (2024타경 38179) | | 기준가치 | 시장가치 | | |
| | | | 감정평가조건 | -- | | |
| 목록표시근거 | 귀제시목록 | | 기준시점 | 조사기간 | 작성일 | |
| | | | 2024. 08. 20 | 2024. 08. 19 ~ 2024. 08. 20 | 2024. 08. 26 | |
| 감정평가 내용 | 공부(의뢰) | | 사정 | | 감정평가액 | |
| | 종별 | 면적(m ²) 또는 수량 | 종별 | 면적(m ²) 또는 수량 | 단가 | 금액 |
| | 구분건물 | 1개호 | 구분건물 | 1개호 | - | 204,000,000 |
| | | | 이하 | 여백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204,000,000.- | |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민세식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대상물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소재 '세천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대구세천한라비발디' 제106동 제1층 제104호 단위세대로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의뢰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의 기본적 사항 등

가. 대상물건의 기본적 사항

■ 총괄 개요

[집합건축물대장 기준]

| | | | | | | | |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566-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187) | | | | | | | |
| 건물명 및 층·호수 | 대구세천한라비발디 제106동 제1층 제104호 | | | | | | | |
| 건물의 개 황 | 지목 | 용도지역 | 대지면적(㎡) | 연면적(㎡) | 층수(지하/지상) | | | |
| | 대 | 3종일주 | 51,045.4 | 6,796.395 | -/20 | | | |
| | 주구조 | | 주용도 | | 사용승인일 | 단지규모 | | |
| | 철근콘크리트구조 | | 공동주택(아파트) | | 2016.01.28 | 11 | 79 | |
| 설비현황 | 난방설비 | 냉방설비 | 위생·급배수설비 | 소화설비 | 화재탐지설비 | 승강기설비 | 도시가스설비 | 기타설비 |
| | ○ | - | ○ | ○ | ○ | ○ | ○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대상물건 개요

| 일련번호 | 동/층/호수 | 면적(㎡) | | | 대지권(㎡) | 용도(현황) |
|------|-----------|--------|-------|--------|---------|--------|
| | | 전유 | 공용 | 합계 | | |
| 가) | 106/1/104 | 62.683 | 23.46 | 86.143 | 33.6502 | 아파트 |
| 합 계 | | 62.683 | 23.46 | 86.143 | 33.6502 | - |

나. 공법상 제한사항 (토지이용계획사항)

- 일련번호 1)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교통광장(2018-07-10)(저축),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완충녹지(저축), 중로2류(폭 15m~20m)(저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4-08)(세천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6-03)(세천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다. 주위 환경

본건 인근으로 대단위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4년 08월 20일자를 기준시점으로 정함.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실지조사는 대상물건이 있는 곳에서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은 2024년 08월 19일 ~ 20일에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본건의 경우 시장가치, 즉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경매)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없 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Ⅲ.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방법

- 가.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방식,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수익성에 기초한 수익방식 등이 있음.
- 나. 원가방식이란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임.
- 다. 비교방식이란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서,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임.
- 라. 수익방식이란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서,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임.

2.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식 적용 규정

- 가. 본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의거함.
-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는 감정평가방식을, 제12조에서는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조정을 규정하고 있음.
- 다. 본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의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등을 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본건은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성이 높은 구분건물로서, 대상물건의 특성상 다른 감정평가방법(원가방식, 수익방식)의 적용이 불필요하거나, 적용에 한계가 있는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되, 인근 유사 구분건물의 참고가격 분석내용 및 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4.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대상물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에 따라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Ⅳ. 그 밖의 사항

1. 본건 내부확인은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인하여 동유형 단위세대의 표준적 내부구조 사용자재 등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본건 위치확인은 현황 도면 및 점유부분 등에 의거 확인하였음.
2.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나, 귀 요청에 의거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제시한 집합건물 구분평가시 토지·건물 배분비율 등을 참작하여, 토지, 건물의 배분금액을 감정평가명세표에 표시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V.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

가. 비교사례의 선정

1) 인근지역의 거래사례

| 기호 | 소재지 | 동/층 | 전유면적 (㎡) | 거래시점 (계약일 기준) | 단가 (원/전유면적㎡) | 거래가액(원) | 비고 |
|----|-----------------------------|--------|----------|---------------|--------------|-------------|----|
| ㉠ | 세천리 1566-1 대구세천 한라비발디 | 105/9 | 62.683 | 2024.06.02 | 3,350,000 | 210,000,000 | - |
| ㉡ | 세천리 1566-1 대구세천 한라비발디 | 106/8 | 62.683 | 2024.04.28 | 3,350,000 | 210,000,000 | - |
| ㉢ | 세천리 1566-1 대구세천 한라비발디 | 106/15 | 62.683 | 2024.06.01 | 3,430,000 | 215,000,000 | - |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인근지역의 감정평가사례

| 기호 | 소재지 | 동/층 | 전유면적 (㎡) | 기준시점 | 단가 (원/전유면적㎡) | 감정평가액 (원) | 감정평가 목적 |
|----|-----------------------------|--------|----------|------------|--------------|-------------|---------|
| ㉠ | 세천리 1566-1 대구세천 한라비발디 | 106/18 | 62.683 | 2024.05.01 | 3,350,000 | 210,000,000 | 경매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화시스템 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비교사례의 선정

감정평가대상 부동산과 위치, 층별 및 위치별 효용도 등에서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을 비교 사례로 선정함.

| 기호 | 소재지 | 동/층 | 전유면적 (㎡) | 거래시점 (계약일 기준) | 단가 (원/전유면적㎡) | 거래가액(원) | 비고 |
|----|-----------------------------|-------|----------|---------------|--------------|-------------|---------------|
| ㉠ | 세천리 1566-1 대구세천 한라비발디 | 105/9 | 62.683 | 2024.06.02 | 3,350,000 | 210,000,000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나. 사정보정

비교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1.000).

다. 시점수정

■ 시점수정치의 산정

-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대구 달성군지역)

2024.5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79.9

2024.7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79

$$\text{상승률} : \frac{79}{79.9} \approx 0.98874 \text{ (약 -1.126\% 상승)}$$

※ 거래시점과 기준시점의 각 직전 달의 매매가격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함.

■ 시점수정의 결정

| 일련번호 | 시점수정치 |
|------|---------|
| 가) | 0.98874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가치형성요인비교

■ 주거용 : 일련번호 가)

| 조 건 | 항 목 | 비교 사례① | 일련번호 가) | 비 고 |
|----------------------|--|--------------|--------------|----------------|
| 단지 외부요인 |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 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풍치,경관 등) 등 | 1.00 | 1.00 | 대등함. |
| 단지 내부요인 |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 1.00 | 1.00 | 대등함. |
| 호별 요인 |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 1.00 | 0.98 | 층별 효용 등에서 열세함. |
| 기타 요인 |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00 | 1.00 | 대등함. |
| 개 별 요 인 비 교 치 | | 1.000 | 0.980 | - |

마.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대상 부동산 적용단가

| 일련 번호 | 비교사례단가 (원/전유㎡)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 요인비교 | 산정단가 (원/전유면적㎡) | 적용단가 (원/전유㎡) |
|-------|----------------|-------|---------|-----------|----------------|--------------|
| 가) | 3,350,000 | 1.000 | 0.98874 | 0.980 | 3,246,033 | 3,250,000 |

2) 대상 부동산의 시산가액

| 일련 번호 | 동/층/호수 | 전유면적 (㎡) | 전유면적당 단가 (원/㎡) | 산출금액 (원) | 시산가액 (원) |
|------------|-----------|---------------|----------------|-------------|--------------------|
| 가) | 106/1/104 | 62.683 | 3,250,000 | 203,719,750 | 204,000,000 |
| 합 계 | | 62.683 | - | - | 204,00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VI.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대상물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소재 '세천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대구세천한라비발디' 제106동 제1층 제104호 단위세대로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시설내역 등 개별적 특성, 인근 유사 구분건물 참고가격의 분석내용 등을 종합 참작하여 감정평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액 결정

| 일련 번호 | 동/층/호수 | 전유면적 (㎡) | 결정단가 (원/㎡) | 감정평가액 (원) |
|----------|-----------|-------------|---------------|--------------|
| 가) | 106/1/104 | 62.683 | 3,250,000 | 204,000,000 |
| 합 계 | - | 62.683 | - | 204,000,000 |

끝.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 용 목 도 | 구 조 | 면 적 (㎡) | | 감정평가액 | 비 고 | |
|------------|--|-------------------------------------|---------------|------------------------------------|----------|--------|-------------------------|-----------------------------------|--|
| | | | | | 공 부 | 사 정 | | | |
| 가 | 1동의 건물의 표시 | 1566-1 대구세천 한라 비발디 106동 | 공동주택 (아파트)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 299.079 | | | | |
| | 1층 | | | | | | | | |
| | 2층 ~ 20층 각 | | | 341.964 | | | | | |
| |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187 | | | 1층104호 철근콘크리트구조 | 62.683 | 62.683 | 204,000,000 | 비준가액 | |
| 1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1566-1 | 대 | 자연녹지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51,045.4 | | | | |
|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 | | | | | |
| | 토지의 표시 : | | | 대지권의 | 종류 : | 1. 소유권 | |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 | | 대지권의 | 비율 : | | 33.6502 | 33.6502 | |
| | | | | | 51,045.4 | | | | |
| | | | | | | |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 배분내역 81,600,000 122,400,000 | |
| 합 계 | | | | | | | | ₩204,000,000.- | |
| 이 하 | | | | | 여 백 | | | |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소재 '세천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대구세천한라비발디' 제106동 제1층 제104호 단위세대로서, 본건 인근으로 대단위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0층건중 제1층 제104호 단위세대로서,

- 외벽 : 대리석,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 내벽 : 벽지, 타일 등 마감
- 바닥 : 합판마루, 타일 등 마감
- 창호 : 시스템창호임.

4. 이용상태

일련번호 가) '아파트' 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및 도로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왕복6차선, 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교통광장(2018-07-10)(저축),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완충녹지(저축), 중로2류(폭 15m~20m)(저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4-08)(세천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6-03)(세천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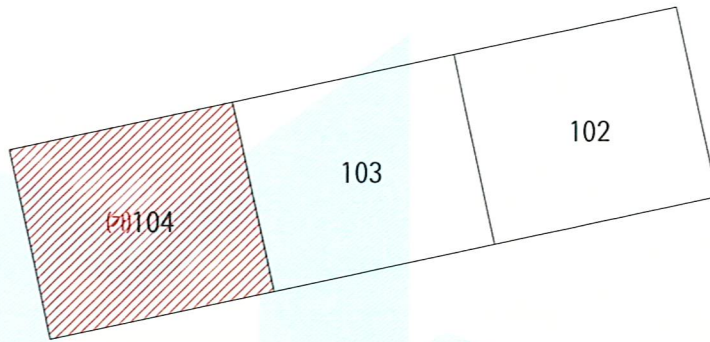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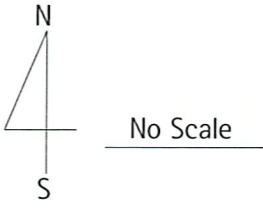
- 1) 임대관계 : 미상임.
- 2) 기 타 : 본건 내부확인은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인하여 동유형 단위세대의 표준적 내부구조 사용자재 등을 기준으로 하였음.

광역 위치도

| |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566-1 대구세천라비발디 제106동 제1층 제104호 |
|-----|---|



호 별 배 치 도



본건(대구세천한라비발디 제106동 제1층 제104호)

사 진 용 지



【 본건 전경 】



【 본건(106동) 】

사 진 용 지



【 본건(출입구) 】



【 본건(현관) 】